

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의안 번호	103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5. 10. 19(월)
제 출 자 : 임영순 대표의원
찬 성 자 : 이범연, 박종욱,
장문혁, 함명섭,
박찬원 의원

1. 주문

가.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.

나. 심사기간은 2015년 10월 23일, 1일간으로 한다.

2. 제안이유

가. 평창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평창군의회위원회 조례 관계규정에 따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.

3. 참고사항 : 없음

심사계획

1. 활동목적

- 심도 있는 심사로 최고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
- 신속한 의사진행

2. 심사안건

-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
-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
- 조례안 심사
 - 가. 평창군 문화예술 육성 지원 조례안
 - 나.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

3. 활동기간

- 2015년 10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8일간으로 한다.

4. 구성

- 이범연 의원, 박종욱 의원, 장문혁의원, 임영순 의원, 박찬원 의원

5. 운영계획

일시	차수	내용	비고
2015. 10.23 (월)	제1차 조례특위 (11:30)	1.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.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. 조례안 심사 가. 평창군 문화예술 육성 지원 조례안 나.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	